



보도	2024.2.29.(목) 조간	배포	2024.2.28.(수)	
담당 부서	조사1국	책임자	국 장	이승우 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장정훈 (02-3145-5582)
	조사2국	책임자	국 장	장창호 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	이장준 (02-3145-5653)
	조사3국	책임자	국 장	임형조 (02-3145-5100)
		담당자	팀 장	장경필 (02-3145-5106)

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

-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·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(19건) 분석 결과,
 - 감사의견 거절,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(15건)가 대부분으로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(13명)·임원(10명)이 다수였고
 -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하여 평균 21.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,
 -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결국 상장폐지 되는 등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.
 -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,
 -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-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,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은 주식 거래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1

개 요

- 상장법인의 대주주·임원 등이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(‘미공개 정보 이용’)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서,
 - 결산시기 중에는 감사의견, 결산실적 등 중요 결산정보가 다수 생성되고 공시되어,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.

2

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분석 결과

- ① 결산정보 중 주로 악재성 정보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되었습니다.
 -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·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(혐의자 170명)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(57명)이며

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

(단위: 건, 명)

구분	21년		22년		23년		합계	
	사건	혐의자	사건	혐의자	사건	혐의자	사건	혐의자
전체	18	51	18	52	20	67	56	170
결산관련	8	18	5	25	6	14	19	57

- 이 중 감사의견 거절,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습니다.

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

(단위: 건, %)

구분	21년	22년	23년	합계(비중)
악재성	6	4	5	15(78.9)
감사의견 비적정	4	4	3	11
경영실적 악화	2	-	2	4
호재성	2	1	1	4(21.1)
합계	8	5	6	19(100.0)

②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·임원 등 내부자이며,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.

-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(13명), 임원(10명)이 다수를 차지하였고,
-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*하며 평균 21.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대주주 13명 중 7명이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사용

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

(단위 : 명, 억원, %)

혐의자 유형	혐의자 수				부당이득 (1인당 평균)
	21년	22년	23년	합계	
대주주	7	3	3	13	275.0 (21.2)
임원	5	-	5	10	17.7 (1.8)
직원	1	-	1	2	0.8 (0.4)
기타 (1차 정보수령자 등)	2	19	3	24	267.6 (11.2)
전체	15	22	12	49	494.9 (10.1)

③ 해당 사건 발생 기업(15사)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이며,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되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

-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대부분(15사중 13사)이 발생하였고,
-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는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되었습니다.

3

향후 계획

- 이에 금감원은 금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.
 -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,
 -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-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 - 코스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.

4

유의 사항

-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바,
 -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
- 따라서, 상장사 대주주·임직원 등은 결산시기 전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*에 유의하시고,
 - * 미공개 중요정보취득이 용이한 '내부자'이기 때문에 매매 시점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-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,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□ 아울러,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*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,

*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케 할 경우 부당이득의 1.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

○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방법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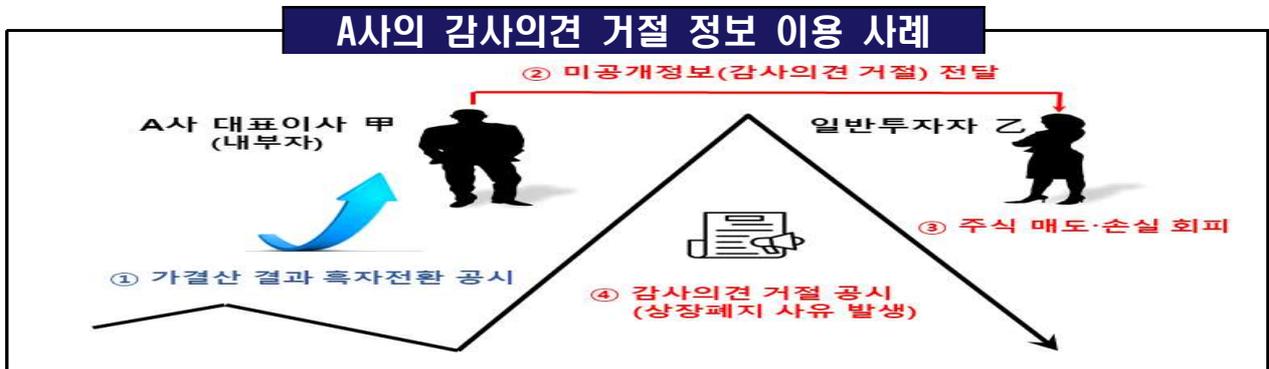
- 인터넷 :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② 민원·신고 → ③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④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- 우 편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(우편번호 07321)

붙임

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

사례1 감사의견 거절 공시前 매도

-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 흑자전환되었다고 공시하였으나, 불과 한달 뒤 이루어진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'감사의견 거절'이 확정 되었으며 이로 인해 A사는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
- A사 대표이사 甲은 이러한 사실을 지인 乙에게 미리 알려주었고, 乙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사실이 공시되기 前 수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습니다(甲·乙 수사기관 통보).



사례2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매도 사례

- B사 회장이자 실질사주였던 丙은 페이퍼컴퍼니 C사 및 D사를 통해 B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
- 연초 B사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되자 丙은 페이퍼컴퍼니 C사 및 D사가 보유중이던 B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습니다(丙 고발).

